

의안번호	제2904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2. 27.

#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04호
----------	--------

제출연월일: 2025. 2. 27.

제출자: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간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개정)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나.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 삭제(모든 안)

다. 정의에 대한 사항 구체화(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6조)

마.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에 대한 사항 보완(안 제7조~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복지지원과-3859(2025. 1. 24.)호]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p>□ 해당조항 : 제4조(군수의 책무) 제2항 ⇒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 해당조항 : 제4조(군수의 책무) 제2항 ⇒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u>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u>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 검토의견 미반영 ⇒ 실태조사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성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여 연령, 직업, 거주 형태, 경제적 상태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반영</p>
<p>□ 해당조항 : 제9조(협의회 구성)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 해당조항 : 제9조(협의회 구성)제3항 ⇒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u> 군수가 위촉한다.</p>	<p>□ 검토의견 미반영 ⇒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기재되어있으므로 미반영</p>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5-115호  
가) 예고기간: 2025. 1. 20. ~ 2025. 2. 10. (21일간)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등록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

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제6조(지원범위)** ①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부서의 소속 직원
3.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으로 한다.

##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중인 조례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발의  
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  
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김 종 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